

비관세장벽 모니터링(일본/도쿄지사)

I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2023.09]

1. 고려인삼엑기스 제품 수출시 규격기준

- 대일 수출용 고려인삼(홍삼) 엑기스 제품의 경우 현재, 일본 수입신고시 청량음료수로 분류되어 청량음료수 규격을 적용받고 있으나, 청량음료 규격의 경우 세관수 규제 등 검역통관이 까다로운 편으로 향후 수입시에는 청량음료수가 아닌 고려인삼 제품으로 수입신고를 통한 통관 검역 원활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함

2. 고려인삼엑기스 제품의 통관시 분류

- 고려인삼엑기스 제품의 경우 통상적으로 청량음료수로 분류되어 해당 규격기준에 따라 납, 비소, 혼탁, 세균수 등의 검사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함
- 식품검역시 품목 분류
 - 후생노동성 검역소가 지정한 고려인삼엑기스 제품의 경우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되어 물에 타지 않고 그대로 먹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수입신고 식품분류 번호는 G810201 로 분류됨
 - 해당 엑기스 제품의 음용방법이 물에 타서 마시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청량음료수로 분류됨. 청량음료수의 경우 H1으로 시작되는 분류코드임

3. 고려인삼 엑기스 제품의 검역통관 자문

- 일본에도 인삼엑기스 제품과 유사한 식품이 있으나 청량음료수로 취급하지는 않고 있음
 - 해당 유사 제품은 직접 먹거나, 물에 녹여서 먹는 경우도 있으며, 분류상은 과실엑기스로 분류됨
- https://www.mikiprune.co.jp/mikiprune_extract/
- 주요 용도가 물에 타지 않고 그대로 먹는 제품일 경우라고 하면, 그러

한 사실을 검역소에 명확히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

- 물로 희석하여 마시는 것을 상정하는 상품일 경우 청량음료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음
- 고려인삼 엑기스 제품 관련 상정되는 수입식품 품목코드(G810201)
 - 검역소가 분류하는 식품코드로 세관 관세번호와는 다른 번호로서 건강식품> 생약적인 것> 고려인삼(분말청량음료는 제외)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함
- 청량음료수에 해당될 경우 H1으로 시작되는 코드로 분류됨
- 수입자의 설명이나 제시 자료(보충설명서, 제품 표기 등)에 의해 판단됨으로 사전에 적정한 자료를 잘 정리하여 통관업체가 검역관에게 잘 못된 설명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가 필요시 됨
- 수입자가 청량음료수 이외의 고려인삼 제품으로도 수출신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사전지식을 가지고 검역소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함
- 고려인삼(G810201) 분류로 인한 장점
 - 본래의 고려인삼 제품으로 품목 판정을 통한 판매시 우위성 확보
 - 일본의 청량음료수 식품규격기준이 엄격하여, 통관이 까다로움
 - 고려인삼 제품으로 통관시 별도 검사 없이 통관 가능함
- 고려인삼 제품의 관세번호 및 관세율

관세번호	제품 내용	WTO협정세율(%)	비 고
1302.19.239	인삼 엑기스	무세	기타 식물성 액즙 및 엑기스
2106.90.292	인삼 분말차	12	무가당, 인삼이 포함된 것
2202.99.200	인삼차(액상)	9.6	무가당, 스틱형 액상차 등

※ 한국은 WTO가맹국임에 따라 WTO협정세율이 우선적용됨

※ 세관의 관세분류와 식품검역소의 식품분류 코드는 일치하지 않으며, 각 기관별로 견해 차이가 날수 있음

<참고사항>

■ 청량음료수의 성분규격(일본)

(1) 일반규격

1. 혼탁(원재료로서 이용되는 식물 또는 동물의 조직성분, 착향 또는 착색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 또는 일반적으로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멸한 미생물(제품 원재료에 혼입이 부득이한 것에 한함)에 기인하는 혼탁 제외)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2. 침전물(원재료로서 이용되는 식물 또는 동물의 조직성분, 착향 또는 착색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 또는 일반적으로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멸한 미생물(제품 원재료에 혼입이 부득이한 것에 한함)에 기인하는 침전물 제외) 또는 고형의 이물(원재료로서 이용되는 식물인 고형물로 그 용량 백분율이 30% 이하인 것은 제외)이 있어서는 안 된다.
3. 금속제 용기포장된 제품의 주석 함유량은 150.0 ppm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대장균군이 음성이어야만 한다.

<참고: 일본 후생노동성 청량음료수 규격기준>

<https://www.mhlw.go.jp/content/000420821.pdf>

2. 시사점

- 수입자가 청량음료수 이외의 고려인삼 제품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하다는 사항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검역소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물에 희석하여 마시지 않을 경우 고려인삼제품으로 수입신고를 추진함으로써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

※ 본 정보는 2021.8월 비관세 장벽 모니터링에 게재한 자료이나 수출업체 등에서 문의가 많아 재게재함

1. 아프리카 말리산 참깨 아플라톡신 위반 명령검사

- 아프리카 소재 말리산 참깨에서 아플라톡신(곰팡이 독소)가 검출되어 해당 수출업체에서 수출되는 참깨에 대해 명령검사가 발동됨
- 말리에서 일본으로 수출된 참깨는 2022년의 경우 5,252톤이었으며, 총 13건이 수입되었으며 그중 1회 검역소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검사결과 위반은 없었음
 - 23년도의 경우 총1,952톤 7회의 수입신고 건수중 1회 검역소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 위반으로 판정됨

※ 자료원 : 일본 후생노동성

https://www.mhlw.go.jp/stf/newpage_35210.html

2. 시사점

- 한국산 식품류에서 아플라톡신 위반 사례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참깨류를 사용한 제품과 관련하여 제품 제조후 기간이 경과된 제품등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위생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시 됨

1. 일본국 수입식품 위반사례 주요내용

○ 위반사례 발생 주요 특징

- 일본 후생노동성 수입식품안전대책실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23.9월의 대일수입식품류 위반건수는 모두 67건이 발생함 (식기류 제외)
- 9월의 한국산 식품 위반사례는 젓갈류 2건에서 대장균군 양성등의 위반이 발생하였음. 젓갈류 1건의 경우 대장균군 양성 이외 첨가물인 폴리솔리베이트 검출 위반 사례가 발생함

- 각국에서 수입 된 전체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성분부적합의 위반 21건(31.3%), 아플라톡신 위반 13건(19.4%), 위생위반 31건(46.3%), 기타 2건(3.0%)으로 위생 위반 사례가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함

2. 주요 경쟁국별 위반 사례

○ 중국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

- 9월의 중국산 수입식품의 위반건수는 20건으로 세계 각 수입국가 중 위반건수가 가장 높았으며, 해외에서 수입되는 전체 수입식품의 위반율 중 29.9%를 차지함
- 신선당근에서 잔류농약 위반, 냉동복숭아에서 잔류농약 위반, 문어튀김 E-COIL 위생위반, 냉동야채류 6종믹스 제품에서 발육가능한 미생물 양성 등 계 20건의 위반이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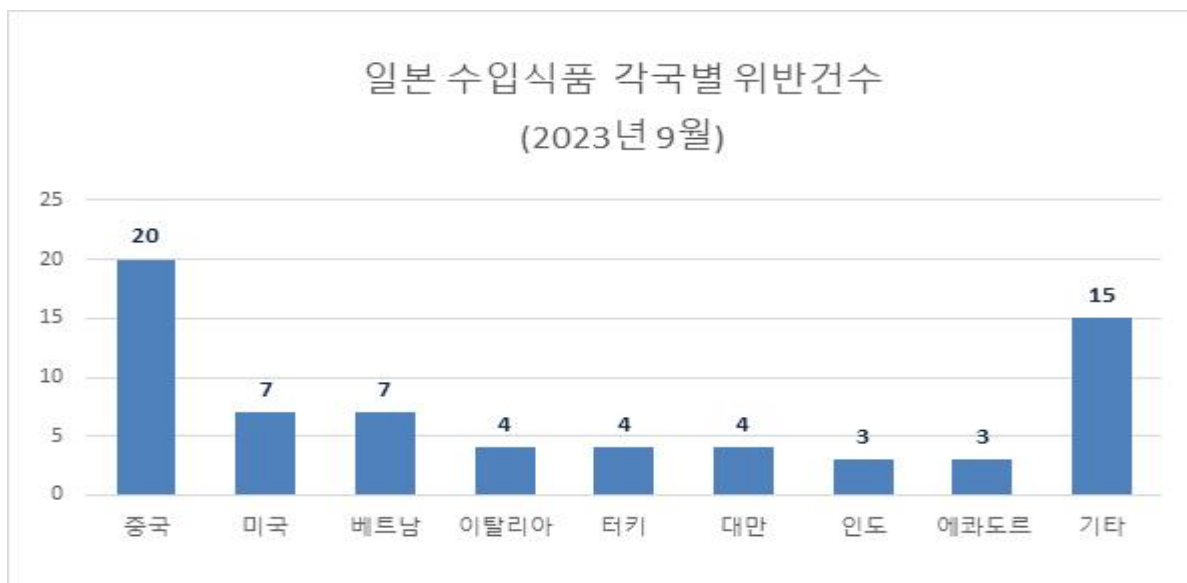
○ 미국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

- 아몬드 및 옥수수 2개 품목에서 총7건의 아플라톡신 위반이 발생함

○ 베트남 수입식품 위반 사례

- 냉동칼라만시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 발생, 냉동새우에서 항생제 위반, 어육제품에서 대장균군 양성 위반 등 계 7건의 위반 발생

<표1> 대일 수출 국가별 식품 위반건수



※ 표 왼쪽 숫자는 위반건수임

<표2> 국가별 식품 위반 내역 상세

국가명	위반건수	위반율	성분부적합	아플라톡신	위생	기타
중국	20	29.9	9		11	0
미국	7	10.4		6	1	
베트남	7	10.4	1		6	
이탈리아	4	6.0		3	1	
터키	4	6.0	4			
대만	4	6.0	1		3	
인도	3	4.5	2		1	
에콰도르	3	4.5			3	
기타	15	22.4	4	4	5	2
합 계	67	100.0	21	13	31	2
비율(%)			31.3	19.4	46.3	3.0